내 부 통 제 및 위 기 관 리 규 정

제정 2023. 11.22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내부통제 제도를 수립 및 운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전사적 위기관리 업무에 관 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직무수행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.
 - ② 내부통제 및 위기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위험"이라 함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,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, 법규 및 정책의 준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말한다.
 - 2. "내부통제"라 함은 조직의 운영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업무운영, 신뢰성 있는 재무 보고 체제 유지, 법규 준수 측면에서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이행하며, 각종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- 3. "내부통제체계"란 내부통제를 위하여 구축·운영되는 통제환경, 위험평가, 통제활동, 정보 및 의사소통, 모니터링 등과 관련된 일련의활동을 말한다.
- 4. "위기"란 위험의 수준이 심화되어 조직의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달성에 중대한 손실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를 말한다.
- 5. "위기관리"라 함은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를 사전에 예측·분석하고, 위기발생 시에는 효과적인 대응 및 복구를 통하여 그 피해와 영향을 최소화하여 조기에 위기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자원을 기획·조직·집행·조정·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을 말한다.
- 6. "경영진"이라 함은 사장, 본부장 등 공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7. 총괄부서란 공사의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8. 이행부서란 내부통제 대상 단위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.

제2장 내부통제·위기관리 조직 및 역할

- 제4조(내부통제 및 위기관리 조직) ① 공사의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, 사장, 내부통제위원회, 총괄부서, 이행부서, 감사부서,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다.
 - ② 사장은 효과적인 내부통제의 실천을 위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

치·운영한다.

- 제5조(내부통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내부통제위원회(이하"위원회")는 사장 및 본부장으로 구성하며, 필요시 안건과 관련된 부서장등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외부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 -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본부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③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- ④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 -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- ⑥ 의결안건의 경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① 위원회는 위기관리 체제 선포 시, 위기관리위원회로 전환한다. 제6조(역할과 책임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체는 각 목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진다.

1. 이사회

- 가.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제·개정
- 나.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주요정책 관련 사항

심의·의결

2. 사장

- 가. 내부통제체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
- 나. 내부통제체계 운영을 위한 인적·물적 자원 지원
- 다. 위기상황시 위기관리 체제로의 선포
- 라. 위기관리 체제시 임직원 총괄

3. 내부통제위원회

- 가. 내부통제 분야별 주요계획 및 점검결과 검토
- 나. 내부통제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의 심의·의결
- 다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- 라. 위기관리 체제 필요성 검토

4. 위기관리위원회

- 가.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 담당
- 나. 위기관리 업무 총괄

5. 총괄부서

- 가. 내부통제체계 운영계획 수립
- 나.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
- 다. 내부통제규정 준수 관련 문제점 및 미비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시정 요구
- 라.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사장 및 내부통제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에 대한 이행관리
- 마. 기타 사장 및 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6. 이행부서
 - 가. 직제상 소관 업무와 소관 조직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
- 7. 감사부서
 - 가. 내부통제체계의 설계 및 운영 적정성 여부 점검
- 8. 임직원
 - 가. 소관 직무 관련 일차적 책임
 - 나. 내부통제 관련 각종 법령. 규정. 지침. 기준 등 숙지 및 준수
 - 다. 내부통제 관련 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
 - 라. 해당 부당행위에 관여 및 협조 금지

제3장 내부통제체계 운영 및 위기관리

- 제7조(내부통제 목적 및 활동 범주) ①경영진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 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필요한 내부통제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 야 한다.
 - 1. 조직 운영 측면 : 경영목표 달성 등을 위한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
 - 2. 회계 및 정보 관리 측면: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, 완결성 및 적시성 확보
 - 3. 법규 및 규정 준수 측면 : 관계 법령 및 내규의 준수
 - ② 제1항의 내부통제체계의 범주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- 1. 통제환경: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상벌 체계, 인력운용 정책, 교육정책, 경영자의 철학, 윤리, 리더십 등

- 2. 위험평가 : 경영목표 달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·외부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·분석하는 활동
- 3. 통제활동 : 조직 구성원이 이사회와 경영진이 제시한 경영방침이나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거나. 동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제반 활동
- 4. 정보 및 의사소통 : 조직 구성원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인, 수집, 보고, 소통하는 절차와 체계
- 5. 모니터링: 내부통제의 효과성 점검 및 평가
- 제8조(통제환경) ① 경영진은 내부통제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직업윤리를 윤리강령 등을 통해 제시하고 솔선수범하며, 조직 구성원이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각자 역할을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통제환경을 조성한다.
 - ② 경영진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시에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하며, 조직 구성원이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이 나 부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조기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.
 - ③ 경영진은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임직원 참여 제고 등을 위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.
- 제9조(위험평가) ① 경영진은 내부통제 목적 달성을 저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하며, 연 1회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.
 - ② 경영진은 지금까지 통제되지 않았던 위험을 적절히 식별·관리할

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·운영한다.

- 제10조(통제활동) ① 경영진은 조직의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정책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,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준수되도록 지시하고, 그 결과를 확인하는 활동들을 정하여 실행한다.
 - ② 경영진은 위험환경변화를 적시에 예측하여 관련 정책과 절차에 반영하고,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등 통제활동의 효과성과 효율 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.
 - ③ 경영진은 모든 임직원의 역할 및 수행업무와 관련한 위험과, 이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,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평가 기준등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- 제11조(정보 및 의사소통체계) ① 경영진은 내부통제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·유지·관리한다.
 - ② 경영진은 조직 구성원이 내부통제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하고, 관련 정보가 조직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의사소통체계를 마련한다.
 - ③ 경영진이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 및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한다.
- 제12조(모니터링) ① 경영진은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주기적인 자가점검 등 자체평가 절차를

마련하여 운영한다.

- ② 감사부서는 독립적인 관점에서 경영진의 자체평가 운영실태와 그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를 수행한다.
- ③ 경영진은 자체평가 결과 또는 감사담당부서 평가결과, 내부통제체계 운영 관련 미비점이 나타난 경우 적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다.
- 제13조(위기관리 체제)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기 관리 체제를 선포할 수 있다.
 - 1. 공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이라 예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
 - 2. 예고 없이 발생한 긴급한 사고로 공사가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 - 3. 기타 사장 또는 내부통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 위기관리위원회 및 전 임직원은 위기관리 체제 선포 시 위기관리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.
 - ③ 위기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.

제4장 보칙

제14조(위임) 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련규정에 따라 담당 본부장 또는 부서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 <2023.11.22>

- 1.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 제정에 따라「위기관리규정」은 폐지한다.